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9호 2018. 2. 19.(화)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 【고 시】

제2018-2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제2018-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
제2018-3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7
제2018-36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고시	9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시 보 발 행 안 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부지 내 「골드리버CC 관리동 증축 및 3번홀 코스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의 1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명 칭 : 골드리버CC 관리동 증축 및 3번홀 코스개선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당 초	175,819㎡	코스:50,887㎡ 건축:2,958㎡ 부대시설:18,161㎡ 수림대조성:103,813㎡	
변 경	175,819㎡	코스:51,905㎡ 건축:3,601㎡ 부대시설:18,720㎡ 수림대조성:101,593㎡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응진 대표 권영기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마. 사업기간 : 인가일 ~ 2019.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입		
1	의당면 청룡리	200	체	73	73	㈜웅진	
2	의당면 청룡리	200-2	체	7	7	㈜웅진	
3	의당면 청룡리	201-1	체	16	16	㈜웅진	
4	의당면 청룡리	220-2	체	126,752	126,752.0	㈜웅진	
5	의당면 청룡리	225	체	7,380	7,380	㈜웅진	
6	의당면 청룡리	225-2	체	4,559	4,559	㈜웅진	
7	의당면 청룡리	225-4	도	691	691	㈜웅진	
8	의당면 청룡리	221-3	임	5,089	5,089	㈜웅진	
9	의당면 청룡리	221-4	임	5,750	5,750	㈜웅진	
10	의당면 청룡리	221-5	임	5,345	5,345	㈜웅진	
11	의당면 청룡리	221-6	임	1,595	1,595	㈜웅진	
12	의당면 청룡리	산43	임	16,102	16102	㈜웅진	
13	의당면 청룡리	684	구	3,847	1,967	국(농수산부)	
14	의당면 청룡리	685	구	1,153	450	국(농수산부)	
15	의당면 청룡리	699	도	543	42	국(건설부)	
16	의당면 청룡리	700	도	1,134	1	국(건설부)	
합 계					175,819		

사. 기타사항

1) 조성계획(변경)

구 분	시설내역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5,819	-	175,819	
1.코스시설			50,887	1,018	51,905	
티	15개소	15개소	916	-	916	
그린	9개소	9개소	4,051	315	4,366	3번홀 코스 개선
페어웨이	9개소	9개소	22,454	1,449	23,903	3번홀 코스 개선
리프	9개소	8개소	22,622	감) 990	21,632	3번홀 코스 개선
병커	5개소	5개소	372	-	372	
퍼팅그린	1개소	1개소	472	244	716	관리동 증축 및 현황반영
2.건축시설			2,958	643	3,601	
클럽하우스	1개동	1개동	1,668	422	2,090	
휴게소	1개동	1개동	405	-	405	
관리1동	1개동	1개동	885	감) 95	790	현황과 상이한 조성계획 변경
관리2동	-	1개동	-	316	316	관리동 증축계획반영
3.부대시설			18,161	559	18,720	
주차장	100대	100대	3,184	69	3,253	현황과 상이한 조성계획 변경
부지내진입도로	L=170m	L=170m	1,533	감) 121	1,412	현황과 상이한 조성계획 변경
카트도로	L=2,408m	L=2,608m	6,939	611	7,550	3번홀 코스 개선
관리도로	L=167m	L=167m	691	-	691	
재해용저류지	5개소	5개소	5,024	-	5,024	
초기우수저류지	3개소	3개소	790	-	790	
물탱크	1개소(지하)	1개소(지하)	-	-	-	
오수처리장	1개소(지하)	1개소(지하)	-	-	-	
4.수림대조성			103,813	감)2,220	101,593	
완충용녹지	-		69,932	감) 230	69,702	3번홀 코스 개선 등
원지형녹지	-		33,881	감)1,990	31,891	3번홀 코스 개선

2) 조성계획도(변경)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2. 0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41-6 (신관동)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2. 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역장부 주소연계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20, 272-3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41-6 (신관동)	2018.02.09	신축	20100202	지역특성과 밀접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1-10	충청남도 공주시 복수골길 33 (신관동)	2018.02.09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순신동 222-58	충청남도 공주시 밭마리1길 77-43 (순신동)	2018.02.09	신축	20100112	누에를 많이 지은 지역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동원동 신여	충청남도 공주시 황송동원로 240-70 (동원동)	2018.02.09	누락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동원동 467-1	충청남도 공주시 황송동원로 254-15 (동원동)	2018.02.09	누락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20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당밀길 7	2018.02.09	신축	20100112	당집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인영리 392-2, 392-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성골길 11	2018.02.09	신축	20110506	마을에 담이 있었다 해서 탄성골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홍정리 1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산수길 7	2018.0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0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평정말길 30	2018.02.09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59-2, 259-3, 259-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뽕속길 235-16	2018.02.09	신축	20100112	해당마을 부락은 마을과 속 계곡과 부락은 마을을 관할하는 도로로 두 자연마을 명칭의 합성자를 사용하며 뽕속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웰소리 597-1, 597-2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장안웰소리길 162	2018.02.09	신축	20100112	웰소리를 관할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환곡리 120-2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암골길 39	2018.02.09	신축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곡리 557-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100	2018.02.09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된 고개 이름 사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동리 722-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아래안골길 77	2018.02.09	신축	20100112	안영리 이랫만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아래안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2. 0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64-2 (반죽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사는유후
여부전	여부법	여부전	여부법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에 2018. 02. 09. 고시 법 도로명주소조 제19의거 관계 공조있어거 다니서 주소로 유비기됨용.
- 공공치있거서 리하·있각상고 다에 재종 공사지 주소(소당해)에 변경치있거서 도로명주소로 여부합됨용.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포에 건물번호관 여부는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19의거서 정한 절차거 따라 신청할 수 다습됨용.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7의제7항거 관계 경변 도로명이 고시된 날사터 3년이 해난 범거 여부할 수 다습됨용.

○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 부우 종전주소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관 지세주소에 공조있어관 재종 공사지 치당된 주소로 한용.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공 주 시 장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고시

1. 변경이유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 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회칙으로 운영하던 바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과정을 거쳐 우리시는 의회 승인을 얻어 2017년 7월 3일 고시하였으나
-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행정시인 “제주시”는 행정협의회 구성원 자격이 될 수 없다」 하여 규약 동의안이 부결
- 이에 행정시인 “제주시”의 구성원 자격 명기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변경

2. 주요내용

- 제3조(구성 및 자격)
 - 제1항의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개정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속한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가 들어있는 경주시·공주시·광주시·나주시·상주시·양주시·여주시·영주시·원주시·전주시·**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진주시·청주시·충주시·파주시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 방법은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정보 등 교류 협력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3.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市에 둔다.

②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각각 구성하되, 회장은 정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고, 총무는 차기 개최도시의 시장이 된다.

② 임원은 도시명의 “가·나·다 순”에 따른 순번제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 종 사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정 집행을 총괄한다.

-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례회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 가능하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전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정례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⑦ 실무협의회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동주도시 업무 담당(6급 상당) 및 담당자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되, 상정 안전에 따라 동주도시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전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전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는 수입금은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동주도시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및 특별 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특별재난지원금
2. 상호 방문 지원금
3. 회원도시 축제화환 지원
4.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① 협의회는 회비집행 상황은 총무가 정례회에서 보고하며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총무가 속한 시의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가 들어있는 경주시·공주시·광주시·나주시·상주시·양주시·여주시·영주시·원주시·전주시· <u>제주시</u> ·진주시·청주시·충주시·파주시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가 들어있는 경주시·공주시·광주시·나주시·상주시·양주시·여주시·영주시·원주시·전주시· <u>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u> ·진주시·청주시·충주시·파주시로 한다.